

## “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”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검토보고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2호(2008.1.31)로 최초 정비구역 지정되고, 중구고시 제2014-14호(2014.2.26.)호로 정비구역 지정 변경고시된 우리구 신당5동 85번지 일대 신당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신당제11구역주택재개발정비조합으로부터 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신청이 있어 이를 검토 후 보고 드림

### □ 법적근거

-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의2, 서울특별시 조례 제7조 및 제42조

### □ 주요 변경 내용

구 분	기 정	변 경	증·감	비 고	
구역면적(㎡)	8,224.8㎡	8,119.0㎡	감) 105.8㎡	경계좌표측량에의함	
동수, 층수	아파트 3개동(지하층/상층6층)	아파트 3개동(지하층/상층6층)	변경없음		
연 면 적(㎡)	24,787.11	24,094.80	감)692.31	건축심의, 사업시행인가변경	
밀도계획(%)	용 적 률	249.99	249.21	감) 0.78	면적변동에의한 재산정
	건 폐 율	28.13	26.00	감) 2.15	면적변동에의한 재산정
정비기반 시설(㎡)	도 로	929.80	946.40	증) 16.60	경계좌표측량에의함
	근린공원	364.00	368.40	증) 4.40	경계좌표측량에의함
	소공원 1	277.00	284.70	증) 7.70	경계좌표측량에의함
	소공원 2	77.00	79.70	증) 2.70	경계좌표측량에의함
	택 지	6,577.00	6,439.80	감)137.20	경계좌표측량에의함
공동이용 시설(㎡)	경 로 당	96.21	73.31	감) 22.90	건축심의, 사업시행인가변경
	보육시설	106.86	66.36	감) 40.50	건축심의, 사업시행인가변경

## □ 협의결과 의견

### ○ 사회복지과 :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의견

- 장애인, 노인,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거하여,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로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시행규칙 제2조1항의 기준을 만족함

### ○ 여성가족과 : 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의견

- 보육정원 최소 20명이상 규모(전용면적 85㎡ 이상)의 어린이집 설치권장 (용도 : 노유자시설)
  - ※ 20명이상 규모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기부채납 또는 영구무상임대 시에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검토

## □ 처리 의견

- 추후 변경 인가시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사항인 보육정원 20명이상 규모(전용면적 85㎡ 이상) 설치 권장
- 검토결과 정비구역변경내용이 정비구역의 경미한 변경 사항으로서, 신당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처리하고, 구보에 고시 하고자 합니다.